##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98

발의연월일: 2024. 8. 13.

발 의 자: 김준혁 • 이수진 • 김문수

안규백 · 서미화 · 박희승

박지원 • 복기왕 • 이언주

박정현 • 박해철 • 김기표

박지혜・권칠승・조 국

부승찬 • 오세희 • 채현일

역태영 · 허성무 · 정성호

이광희・김 윤・김주영

강유정 · 송옥주 · 최민희

추미애 • 한병도 • 김영화

김용만 의원(3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되어 있음. 이는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역사가 곧 대한민국역사의 시작이며 건국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밝힌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간직해 나가야 할 국민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음.

한편 독립기념관은 외침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를 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

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복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겨레의 전당임.

독립기념관이라는 기관 특성상 역대 관장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나 독립운동사·친일반민족사 등을 연구한 학자들이 임명되었음. 그런데 최근 뉴라이트 계열의 식민사관을 가진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되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독립기념관장은 국립중앙박물관장, 전쟁기념관장 등과 함께 차관급 대우를 받는 주요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인사를 관장에 임명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독립기념관 실립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임. 그러한 인사를 독립기념관 이사로 임명·지명하는 것도 마찬가지임.

이에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당화·미화하거나 찬양·고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 이사의 해임 또는 지명 철회 사유 를 규정하여 그러한 인사가 독립기념관장 또는 이사로 임명·지명되 는 것을 막고 추후라도 관장직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 4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념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결격사유"를 "결격사유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사회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관장, 제7조제3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임명 또는 지명된 이사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당화ㆍ미화하거나 찬양ㆍ고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를 제외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자에게 해당 이사의 해임 또는 지명 철회를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이사를 해임하거나 지명 철회를 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임원의	<u> 결격사유</u> )	1 ~	제10조(임원의 <u>결격사유 등</u> ) ①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④ 이사회는 제7조제2항에 따
			라 임명된 관장, 제7조제3항제3
			호ㆍ제4호에 따라 임명 또는
			지명된 이사가 일본 제국주의
			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
			당화 • 미화하거나 찬양 • 고무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를 제외한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
			자에게 해당 이사의 해임 또는
			지명 철회를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이사를 해임하거나 지명
			철회를 하여야 한다.